

법정 보수교육 및 보수교육 대상 관련 Q&A

[보수교육 면제자 관련]

Q. 저는 올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신규 자격증 취득자는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로 등록한 후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저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사회복지(간호, 심리, 사회복지, 보건 전공 관련) 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은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합니다. 당해연도 성적표 또는 재학증명서(유효기간 종료 전 업데이트 필요)를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신 후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사회복지(간호, 심리, 사회복지, 보건 전공 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 이라면 보수교육 면제자(전임강사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직증명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신 후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저는 군복무자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군복무자는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합니다. 병적증명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신 후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저는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중입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계(기관 내 결재 받은 공식적 기안)를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신 후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저는 육아로 인해 현재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1~2년 정도는 업무에 종사할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하나요?

A. 육아 휴직자인 경우 보수교육 면제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퇴사를 한 상태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Q. 저는 올해 6월 중 출산 예정이어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개월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도 보수교육 면제자에 해당하나요?

A. 출산휴가의 경우 보수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12시간(공통 4시간 + 개별 8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유예자 관련]

Q. 저는 올해 3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원을 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인 경우 보수교육 유예자에 해당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진단서(기간 표시) 등록 후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저는 올해 3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원을 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6개월 미만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인 경우 보수교육 유예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당해연도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12시간(공통 4시간 + 개별 8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미이수한 보수교육에 대한 소급 적용 관련]

● 미이수한 보수교육에 대한 소급 적용

- ◆ 면제·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당해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 다만, 당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복귀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 유예 사유가 해소되어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자의 해당연도 교육 시간은 유예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감함.

① 유예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일 경우 → 해당연도 12시간 + 소급 4시간 이상

② 유예 기간이 2년 이상 ~ 3년 미만일 경우 → 해당연도 12시간 + 소급 8시간 이상
(공통 4시간 이상, 개별 8시간 이상)

③ 유예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 해당연도 12시간 + 소급 12시간 이상
(공통 4시간 이상, 개별 8시간 이상)

Q.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면제**·**유예** 기간이었으며, 2018년 12월 1 일자로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자인가요?

A. 면제·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당해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복귀 다음해인 2019년도부터 연간 보수교육 12점(공통4시간+개별8시간) 이상을 이수 하면 됩니다.

Q.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총 13개월 간 **유예** 기간이었으며, 2019년 5월 1일자로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자인가요?

A. **유예** 사유 해소 후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당해 연도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소급 적용의 대상자가 아니며,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12시간(공통4시간+개별8시간)과 소급 4시간 이상 총 16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Q.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총 13개월 간 **유예** 기간이었으며, 2019년 8월 1일자로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자인가요?

A. **유예** 사유 해소 후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당해 연도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소급 적용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해당연도 보수교육 12시간(공통4시간+개별8시간) + 소급 4시간 이상(총 16시간 이상)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Q.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총 13개월 간 **면제** 기간이었으며, 2019년 5월 1일자로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자인가요?

A. **면제**자의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자가 아니며,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당해 연도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소급 적용의 대상자가 아니며, 해당연도의 보수교육 12시간(공통4시간+개별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Q.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총 13개월 간 **면제** 기간이었으며, 2019년 8월 1일자로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자인가요?

A. **면제**자의 경우 소급 적용의 대상자가 아니며 정신건강업무에 복귀한 당해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복귀 다음해인 2020년도부터 연간 보수교육 12시간(공통4시간+개별8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기타] - 분할이수 관련

Q. 제가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을 듣던 중 오후 3시 경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끝까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전부터 참석한 보수교육 부분(5시간)에 대해서는 이수 시간이 인정되나요?

A. 이수 시간은 분리하여 인정될 수 없으므로 추후 다시 교육을 신청하셔서 8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인정됩니다.

Q.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요청하는 개별 보수교육에서 4시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시간은 협회원으로서 강의를 이수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총 8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강의한 4시간은 빼고, 나머지 이수한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개별과정 보수교육은 분할인정이 되지 않으며, 강사 시간은 인정되지 않기에, 다른 교육을 신청하셔서 8시간 모두 교육 이수시만 인정이 됩니다.

Q. 저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직원이 없어 제가 종일 8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4시간씩 나눠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부분 이수시간 인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분할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고민하고 내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타] - 취업시점 관련

Q. 저는 올해 현업에 종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법정보수교육 대상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보수교육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Q.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직 상태였으나 12월 1일자로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당해연도 6개월 미만의 종사자는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Q. 올해 5월까지 일을 하지 않다가 6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에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데, 무직 상태에서 이수한 보수교육도 인정되나요?

A.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연간 12시간(공통과정 4시간 + 개별과정 8시간) 이상을 이수시되, 무소속이었던더라도 같은 해에 이수하신다면 인정이 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의 이수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소속과 업무 관련

Q. 정신건강전문요원이며, 현 기관에서 정신건강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입사 당시 기관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이 아닌 '일반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전문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전문요원자격으로 채용되지 않았더라도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Q.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아닌(예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A. 현재 정신건강 관련 기관이 아닌 또는 정신건강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 연 법정보수교육 12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관련

Q. 올해 제가 공통과정 4시간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소급하여 총 8시간을 이수해도 되나요?

A. 당해연도에 이수하지 못한 보수교육은 다음해에 소급해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Q. 올해 제가 공통과정 4시간은 이수했습니다만 개별과정 8시간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올해 듣지 않은 8시간을 포함하여 총 16시간을 들어도 되나요?

A. 당해연도 보수교육은 당해연도에만 인정됩니다. 내년에 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